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5 이하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 이하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25 이하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5 이하

제25조의6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신용카드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제25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25조의6제5항은 2022.1.1.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4>

## 적격 비용(제25조의4제2항 관련)

### 1. 자금조달비용

신용판매(리볼빙 포함)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신용공여기간(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판매대금 지급일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의 제1회차 신용판매 이용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담하는 금융비용. 다만, 신용카드회원에게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판매와 관련된 금융비용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적격 비용 예시>

- 신용판매에 대한 신용공여기간 동안의 자금조달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회원에게 할부신용판매수수료·리볼빙신용판매수수료 등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의 자금조달비용
- 신용판매와 무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융사업 및 할부·리스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자금조달비용
- 가맹점이 기 부담한 무이자 할부 관련 자금조달비용

### 2. 위험관리비용

대손비용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판매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 신용카드회원에게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판매와 관련된 대손비용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적격 비용 예시>

-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또는 갱신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판매 관련 대손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 미사용약정 금액에 대한 대손비용
- 신용카드회원에게 할부신용판매수수료·리볼빙신용판매수수료 등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판매와 관련된 대손비용
-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 또는 갱신 당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정한 개인신용평점이 0인 신용카드회원의 신용판매 관련 대손비용

- 신용판매와 무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융사업 및 할부·리스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대손비용
- 가맹점이 기 부담한 무이자 할부 등 관련 대손비용
- 신용카드업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 3. 거래승인·매입정산 등 비용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거래승인, 매출전표 매입, 결제거래 정산 등의 업무 처리를 대행하거나 지원하는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등 거래승인 수수료
- 신용카드등 매출데이터 중계, 매출전표 수거·보관 등 매입정산 관련 수수료

### 4. 마케팅비용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또는 경품 제공 등 신용카드등의 매출 확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이 경우 마케팅비용은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하며, 특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에 직접 귀속시켜야 함

<적격 비용 예시>

- 상품약관에 따라 신용카드등의 이용시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비용
- 상품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 이외에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신용카드등의 매출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회원이 부담하는 제휴연회비
- 상품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
- 신용판매와 무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융사업 및 할부·리스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마케팅비용

## 5. 일반관리비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전산운영비, 건물 임차료, 공과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 일반적인 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

<적격 비용 예시>

- 급여·퇴직급여(명예퇴직급여를 포함한다)·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전산운영비, 건물 임차료, 공과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 일반적인 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 부문별로 배분하고, 신용판매 사업 부문에 배분된 비용을 신용카드가맹점 결제 부문에 배분한 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회원의 이용대금 청구비용, 신규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신용카드등의 발급 비용, 신용카드등의 배송비용 등 신용카드회원의 관리와 관련한 비용
- 신용판매와 무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융사업 및 할부·리스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
- 접대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기타 비경상적 요인에 의한 비용

## 6. 조정비용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유한 거래 특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비용을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

<조정비용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예시>

- 야간 거래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가맹점
-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가맹점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말한다.</p> <p>1. <u>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8 이하</u></p> <p>2. <u>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3 이하</u></p> <p>3. <u>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4 이하</u></p> <p>4. <u>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6 이하</u></p> <p>② ~ ④ (생략)</p> <p><u>&lt;신설&gt;</u></p> | <p>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br/>-----<br/>-----<br/>-----<br/>-----.</p> <p>1. <u>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5 이하</u></p> <p>2. <u>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 이하</u></p> <p>3. <u>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25 이하</u></p> <p>4. <u>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5 이하</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신용카드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제25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u></p> |